

1. 개정이유

선발시험 응시자격을 현역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장교·부사관으로 완화하고, 신체검사를 민간 검진기관에서만 시행하도록 하며, 현역 근무 평정 점수 반영기준을 변경하는 등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제도의 운영 간에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·개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선발시험 응시자격 완화(안 제5조)

- 1) 예비군지휘관(군무원 5급)은 장기복무 영관장교로, 군무원 7급은 현역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위관장교·부사관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, 재임용되어 소령으로 전역한 장기복무자가 아닌 영관장교는 예비군지휘관이나 군무원 7급에 응시할 수 없음
- 2) 장기복무 영관장교가 아니어도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한 영관장교로 변경

나. 신체검사 기관을 민간 검진기관으로 일원화(안 제14조의2, 별지2호서식)

- 1) 신체검사를 민간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타 군무원과의 형평성과 군 병원 신체검사 대상자의 통제·관리를 위한 군 부대·병원의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군 병원·민간 검진기관에서 진행되는 신체검사를 민간 검진기관에서만 진행하도록 변경

다. 현역복무실적 평가 중 근무평정 점수 반영기준 변경(안 제15조)

- 1) 각 군/계급별로 근무평정의 절대평가 요소와 비중이 다르고, 절대

평가 점수만 반영하는 현행 기준은 응시자간 점수 차이가 없어 변별력이 떨어짐.

- 2) 각 군/계급별 응시자의 능력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근무평정 점수 반영기준을 절대평가 점수에서 종합판정점수로 변경

라. 배점을 부여하는 동원·예비군 관련 부서 추가 및 근무기간 기준 신설 (안 제15조, 별표7의2)

- 1) 육군 동원·예비군 관련 부서에 누락된 특수전사령부 동원과와 여단 동원과 추가
- 2) 각 군의 인사관리 규정의 보직기간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동원·예비군 관련 부서에서 6개월 이상 근무시 배점을 부여하도록 최소 근무기간 기준을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

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군인사법」 제6조에 따른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(장교·부사관이었던 사람이 전역 후 다시 장교·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현역 복무기간은 다시 임용되기 전과 후의 기간을 합산한다)한 사람

제14조의2제2항 중 “검진기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병원 중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응시원서 작성시 본인이 희망한 검진기관 또는 군병원”을 “검진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간”을 “기간 내”로, “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”를 “실시한 신체검사보고서를 제출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장 또는 군병원장이”를 “장이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본문 중 “근무평정표 중 절대평가”를 “근무평정표상의 종합판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근무 경력자 가점 적용 기준”을 “근무경력 평가기준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 응시원서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비서류	비고
가족관계증명서·기본증명서·주민등록등본: 최근 1개월 내 발행 원본	각 1부
사진(3.5센티미터×4.5센티미터)	4매
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(일반군무원 6급 이하 응시자만 해당한다)	1부
신원진술서	1부
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(인증서를 소지한 사람만 해당한다)	1부
면접용 경력확인서	1부
개인정보 제공동의서(응시원서 제출 시 포함)	2부
국민체력 인증서 사본(인증서를 소지한 사람만 해당한다)	1부

비고: 사진 4매는 응시원서용 2매, 신체검사용 1매, 신원진술서용 1매이며, 인터넷 지원의 경우에는 응시원서용 2매를 제외하고 2매만 제출한다.

별표 5 제1호의 예비군 중대장 /5급의 보직경력란 나목 중 “해상전담”을 “해상전탐”으로 한다.

별표 7의2의 제목 중 “동원·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 경력자 가점 적용 기준”을 “동원·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경력 평가기준”으로 한다.

별표 7의2의 육군의 동원·예비군 관련 부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육군	• 육군본부: 동원참모부 • 지상작전사령부: 자원동원과, 예비군과 • 2작전사령부: 동원참모처 • 수도방위사령부: 동원참모처
----	--

작성방법

- ① 선발시험 횡수란에는 선발시험 공고에 따른 시험횡수를 적으십시오.
- ② 응시번호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(응시표 접수처에서 적습니다).
- ③ 응시회차란은 이번 응시를 포함하여 응시한 횡수를 적으십시오.
- ④ 체력검정·면접 희망 수임군부대란에는 체력검정과 면접 받기를 희망하는 수임군부대를 적고, 반드시 해당 수임군부대에 서 체력검정과 면접을 받으십시오.
- ⑤ 병과란에는 본인이 현역으로 복무하였을 당시의 병과를 적으십시오.
- ⑥ 계급란에는 전역(퇴역) 당시의 최종 계급을 적으십시오. 다만, 「명예 및 임기제 진급」, 「예비역간부 진급」 하신 분은 □에 √표를 하십시오.
- ⑦ 성명란에는 개명을 하신 분의 경우 개명 전의 성명을 적으십시오.
- ⑧ 생년월일: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적으십시오.
- ⑨ 나이: 전반기 시험의 경우 6월 30일, 후반기 시험의 경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나이를 적으십시오.
- ⑩ 근무희망 직위·지역
 - * 응시분야 구분 없이 제1지망부터 제5지망까지의 근무 희망 직위와 지역을 적되, 선발공석에 예비군부대 지휘관 외의 직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희망직위 중 예비군부대 지휘관 외의 직위가 반드시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. 다만, 7급 직위의 경우 선발 예정 지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축소 선택할 수 있습니다.
 - *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지역 또는 직장예비군부대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.
 - * 여단장·연대장·대대장은 직장만 응시할 수 있고, 직장은 일반직장과 대학직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 - * 직위는 희망 직위명(중대장, 정보작전과장, 훈련과장 등)을 적고, 지역은 해당 직위 중에서 응시자가 희망하는 행정구역(시험공고 참조)을 적으며, 직장은 행정구역과 () 안에 일반직장, 대학직장을 반드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.
 - * 세부직위 내용은 선발 공고에 포함되어 공고합니다.

유의사항

1.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및 사진 위의 담당자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 2.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원관의 사진 1매를 지참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.
 3.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필기구(컴퓨터용 수성 싸인펜/흑색 플러스펜) 외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.
- *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은 체크(적색) 및 마킹(흑색)이 동시에 가능한 펜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.
4.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, 응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.
 5. 답안지에 적혀 있는 작성요령, 주의사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지를 작성하고, OMR카드를 작성할 때는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 6. 시험장에 입실한 사람은 해당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임의로 퇴장할 수 없습니다.
 7. 부정행위자,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즉시 퇴장시키고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며, 앞으로 5년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 8. 그 밖에 시험에 관련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

현행

제5조(직위별 응시자격 등) ① ~
③ (생략)
④ 예비진력관리 업무담당자의
각 직위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
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현
역에서 6년 이상 복무(위관장교
· 부사관이었던 사람이 전역 후
다시 위관장교· 부사관으로 임
용된 경우 현역 복무기간은 다
시 임용되기 전과 후의 기간을
합산한다)한 예비역 또는 퇴역
위관장교· 부사관은 일반군무
원 7급에 응시할 수 있다.

1. 「군인사법」 제6조제1항 ·
제5항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
또는 부사관으로서 같은 법
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
마친 사람

2. (생략)
⑤ (생략)

제14조의2(신체검사) ① (생 략)

개 정 안

제5조(직위별 응시자격 등) ① ~
③ (현행과 같음)
④ -----

----- . <단서 삭제>
제>

1. 「군인사법」 제6조에 따른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(장교·부사관이었던 사람이 전역 후 다시 장교·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현역 복무기간은 다시 임용되기 전과 후의 기간을 합산한다)한 사람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4조의2(신체검사) ① (현행과

한 점수를 합산한 후 심의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에 별표 7의 2의 동원·예비군 관련 부서 군 무 <u>경력자 가점 적용</u> 기준에 따 라 부여하는 0.2점 범위 내의 점 수를 더하여 평가한다. 1. ~ 3. (생 략) ⑧·⑨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<u>경력 평가</u>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⑧·⑨ (현행과 같음)
--	--